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59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월 2일

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진두생, 주찬식, 신건택, 우미경,

이혜경, 박마루, 박성숙, 이숙자,
김현기, 송재형, 유동균, 김정태,
유찬중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요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 확대로 주민들이 쉽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바, 주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)

나. 제2항의 신설에 따라 각 항의 번호를 수정하고 같은 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항의 번호를 수정함(안 제7조제3항부터 제6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및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”을 각각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”을 “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) ①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재공고·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.</p>	<p>제7조 (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제3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-----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----- -----.</p>